

- 라. 복수 교감의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 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교육부 인사실무편람 2016.05.)
- 마. 복수 교감인 학교는 교감 2인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공동으로 평정하고 날인한다.
- 바. 특수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는 각각 별도로 평정한다.
- 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점 또는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승진규정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6제2항)
- 아. 평정자는 평정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연수파견, 휴직 중에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현 소속교에서 평정함)
- 자.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교감의 해당 학년도 근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차. 평정단위 학년도 기간 중 휴·복직 등으로 소속교를 달리한 경우 전소속교와 현소속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현소속교에서 평정한다.
- 카. 다면평가자, 평정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평정대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5.19.))

## 9.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

기관명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고등학교	일반(보건 포함), 특수 · 사서 · 전문상담 · 영양 · 실기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특수학교	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교육국(과)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기관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도교육청	장학(교육연구)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 교장 유고 시 : 교감의 평정자는 교육국(과)장,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

\* 교감 유고 시 :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